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 정 2015. 9. 11.
개 정 2020.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42조 따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절차, 내부 고발 자를 포함한 신고자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신고 문화정착 및 청렴한 공직풍토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부패행위 신고자의 성실의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조(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① 공단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패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의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부패행위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장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4조(클린고객신고센터 운영) 내·외부 부조리 및 고충 등 접수·처리
는 클린고객신고센터에서 전담 운영한다.

제5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클린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
하여 부패행위 신고서를 상시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클
린신고센터의 직원이 대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
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6조(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
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패행
위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 접수절차)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
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자가 방문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행
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수
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8조(출장접수)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위하여 클린고객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보완의 요구) ① 클린고객신고센터 장은 부패행위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부패행위를 하는 자
3. 부패행위 내용
4. 부패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
5. 부패행위의 증거 등

② 클린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부패행

위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클린신고센터 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클린신고센터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부패행위 신고의 조사) ① 클린신고센터 장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에 따른 절차 및 사항은 감사팀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시 클린신고센터의 장 및 조사 담당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행위 신고의 종결) ① 클린신고센터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부패행위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

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7.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신고로 인해 결과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클린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조사결과를 감사·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신고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14조(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단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단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①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임직원행동강령 제44조제7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16조(협조사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내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7조 관련)

부패행위신고접수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고유형	신고자	신고 내용	담당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비고
20×× - 00								

【별지 제1-1호】 (제7조 관련)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반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반부패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반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반부패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제7조 관련)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 고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부패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조리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p>		
<p>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p>			

【별지 제3호】 (제11조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조사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 일체에
대하여 사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¹⁾ 및 규정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90조 제1항), 신변보호
를 받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8조). <개정 2020.10.15>

